전주양현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

[시행 2023.3.1.] [2023.2.1., 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양현초등학교(이하 "양현초"라 한다) 출결관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양현초 학생의 출석상황 및 체험학습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적용한다.

제3조(출결상황관리)

가. 결석

- 1) 결석일수의 산정
- : 학칙에 따라,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 (담임교사에게 사전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.)
- 2)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가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나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'학교·시도(교육청)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(**제4 조(체험학습)**을 참고), 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'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다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 이수 기간
- 라)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,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- 마)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[양식 1] 경조사 참가 확인서 제출

【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】

구 분	대 상	일 수	비고
결 혼	• 형제, 자매, 부, 모	1	
입 양	• 학생 본인	20	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
사 망	•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	
	•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• 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	3	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 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.
	• 부모의 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	1	

- 바)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- 사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,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
- 아)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·조퇴·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고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. **[양식 2] 결석계** 제출.
- 3) 질병으로 인한 결석 [양식 2] 결석계 + 증빙서류 제출.
- 가) 상습적이지 않은 1~2일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: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**에 ① 결석계 제출
- 나) 3일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: <u>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</u>에 ① 결석계+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)를 첨부 제출
- 다)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·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

- 라)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질환, 심혈관 질환등)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첨부한 결석계를 <u>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</u>에 제출하여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마)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산의 진단서(소견 서)를 첨부한 결석계를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**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바)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를 첨부한 결석계를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**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* 라)~바)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.
- 4) 미인정 결석 **(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)**
- 가)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나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다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라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- 마)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
- 바)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※ 교외체험학습 중 기간을 초과한 결석 및 허위로 추진한 결석 등
- 5) 기타 결석 **(학교장 승인 필요) [양식 2] 결석계** + 증빙서류 제출.
- 가)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<u>학교장이 인정</u>하는 경우
- 나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<u>학교장이 인정</u>하는 경우

나. 지각·조퇴·결과

- 1) 지각: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- 2) 조퇴: 등교시간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
- 3) 결과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4) 위의 가. 2).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·조퇴·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5) 지각·조퇴·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미인정, 기타로 처리한다.
- 6) 같은 날짜에 지각·조퇴·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.
- 7)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.
- 8)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·조퇴·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,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.
- 9) 연 10회 초과의 반복적인 지각·조퇴·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.
- **다. 출결처리: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결을 처리한다.
 - 1)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공휴일을 제외한 **5일 초과인 연속**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,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한다. 단, 병결의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, 신체적인 질병에 한하여 진료과목과 대략적 치료 상황을 기재한다.(동일한 질병명에 대해 담임 간 기재 차이 여부 확인)
 - 2) 단기결석인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**5일 초과인 경우**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한다.

라. 학년 수료

- 1)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2)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

로 학적 관리한다.

3) 위 2)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체험학습)

가.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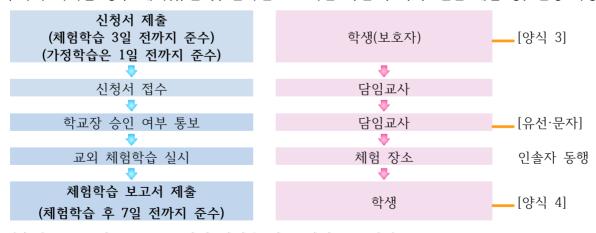
- 1) 개인 교환학습: 1개월(4주) 이내
- 2) 단체 교환학습: 2주일 이내(단, 해외 교환학습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)
- 3) 교외체험학습[양식 3] 교외체험학습 신청서, [양식 4] 교외체험학습 보고서

◇ 운영

- 가.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,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, 그 기간은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<u>연 15일 이내</u>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나. 교외체험학습은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,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활동을 의미하며, <u>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</u> 경계'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'가정학습'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.
- 다.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운영이 가능하다. (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)
- 라.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<u>보호</u> <u>자의 책임 하에 실시</u>한다. 단,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(Unaccumpanied Minor)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◇ 신청 절차

- 가.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, <u>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</u>)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, [양식 3]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<u>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</u>하고,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[담임교사에게 유선 또는 문자]로 통보 받은 후 실시하며,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[양식 4]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.
 - * 불가피한 사유(천재지변 및 지역내 감염병 확산 등)로 인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(유선 및 온라인으로 사본 확인 후 추후 원본 제출 등) 인정 가능함.



- 나.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.
- 다.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.

- ※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.
- 라.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,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.
- 마.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(가정학습의 경우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 활동)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
- ※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(미인정 결석 처리)
- · 사설학원, 종교단체,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
- ·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
- 바.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**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**하며, 신청서 및 보고서,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**5년 간 보관**한다.
- ◇ 학교 홈페이지->학교소식 및 각 학급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
- 제5조(규정외) 이 규정외 사항은 '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' 및 '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'에 따르며, 감염병(코로나19) 관련 출결관리는 [별지 1]과 '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초등(특수)학교 출결·평가·기록 가이드라인'을 따른다.
- 제6조(출석상황처리) 다음이 규정외 사항은 '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' 및 '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'에 따르며, 감염병(코로나19) 관련 출결관리는 [별지 1]과 '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 년도 초등(특수)학교 출결·평가·기록 가이드라인'을 따른다.

부칙 <2019.3.1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3.1.>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양식 1] (학교제출용:보호자)

경조사 참가 확인서

제 학년 반 번 이름:

위의 학생을 아래와 같이 경조 행사에 참석하였으니 출석 처리토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

- 1. 행사 참여 기간 : 2023년 월 일() ~ 2023년 월 일()(일간)
- 2.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

구 분	대 상	일 수	비고
결 혼	• 형제, 자매	1	
입양	• 본인	20	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
사 망	• 부모 및 부모의 부모	5	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
	• 부모의 조부모.외조부모	3	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
	• 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	J	함.
	• 부모의 형제.자매	1	

[☞] 해당되는 행사에 ○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3. 행사장소 :

※ 필요시 기타 증빙 서류(장례식장 확인서 등) 첨부

2023년 월 일

보호자: (서 명)

담 임: (서 명)

결 석 계

전주양현초등학교

학 생 명	제 학년 반 번 이름 :
기 간	2023년 월 일() ~ 2022년 월 일() (일간)
결석 유형	□1~2일 결석 □3일이상 결석 □건강장애 결석 □만성질환 결석 □미세먼지 기저질환 결석 □가습기 건강피해 결석 □기타 결석 □생리통 결석
결석 사유	

- 1) 상습적이지 않은 1~2일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만 제출
- 2) 3일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와 + ②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 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)를 첨부 제출 *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는 출석을 인정하는 학부모 확인 서류임.

2023년 월 일

보호자: (서 명)

담 임: (서 명)

[양식 3] 사전(3일전) 작성 및 제출 5년보관(학교제출용:보호자)

-1	담 임	교무	교 감
결			(전 결)
재			

연번 2023 - ()

교외체험학습(국내/국외 및 가정학습) 신청서

체험학습	역 인	긴	긴	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~ 건오	1	
참 가 자							
7] 71	0.0	1001=	o] o]/) 00001	4 0) U	() (0171)
기 간	20)23년	월 일() ~ 2023५	년 월 일 	() (일간)
시 간		시	분 ~	시 분	※ 반일/	신청의 경	9우에만 작성
신청유형	□ 체험	험학습 (국	내/국외)	□ 가정학	습 ※ 해당	t유형에 #	체크 및 ○표
장 소					*	· 구체적	인 장소 기재
	フ]간	학생.	과의 관계	성 명	, ;	전 화
인솔보호자							
체험학습 주 제							
T /II							
-1.7. 7.0							
학습내용							
	※ 교외체현 것을 확연	– . –	동안 안전 /	사항을 포함한	발생하는 모든 저	반 문제어	대해 책임질
	※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. 건강을 학						
확인사항	인시키겠습니다. ※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(가정학습의 경우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						
	동)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. ※ 체험학습 신청서의 경우 실시 3일(토,일,공휴일 제외) 전까지, 가정학습 신청서의 경우						
					날 제외) 전까지, 후 7일 이내 제출		
				<u> </u>			1 1

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월 일

학생: (서 명)

신청인 보호자 : (서 명)

[양식 4] 보고서 제출기간: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5년보관(학교제출용:학생)

바

-1	담 임
결 재	(전 결)

교외체험학습(국내/국외 및 가정학습) 보고서

서 며

체험학습	학년	반	번	성 명	전화	비고
참 가 자						
기 간	20)23년	월 일() ~ 2023년	월 일()(일간)
시 간		시	분 ~	시 분	※ 반일신청의 7	병우에만 작성
신청유형	□ 체학	험학습 (국	내/국외)	□ 가정학습	※ 해당유형에	체크 및 ○표
장 소					※ 구체적	인 장소 기재
■ 무엇을, 어떻게	 게, 소감(필	교시 사진	등은 뒷덕	 면 부착)		
무엇을						
어떻게						
소 감						

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일 월 2023년

> 학생 : (서 명)